

(24.01.01.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)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관련 안내

▶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.(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)

- ① 대기기간(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간)이 지난 후,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(건설일용근로자, 프리랜서, 노무제공자 포함)을 개시하였을 것
- ②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
★"상용근로자"로 재취업한 후 "사업주의 사정[비자발적 사유-폐업, 도산, 권고사직(상실코드 22, 23)]" 에 의해 퇴직하고 다시 "상용근로자"로 재취업일까지 "10일미만(공휴일포함)" 인 경우 "계속 고용"으로 인정★
- ③ 일용근로자로 재취업 한 경우, 재취업한 날 기준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것
[ex. 재취업일이 3월15일의 경우, 단위개월 산정은 3월15일~4월14일(1개월째), 4월15일~5월14일(2개월째)----->
다음해 2월15일~3월14일(12개월째), 매 개월 마다 10일이상 일용근로(근로복지공단 신고 필수)]
- ④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(자영업자, 프리랜서 포함),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뒤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
- 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가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소1회 이상 해당 직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후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였을 것
- 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, 다른 수급요건 충족 시 **선지급** 가능

★자영업자, 노무제공자, 예술인으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대상 아님.

▶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 "지급대상에서 제외" 됩니다.

- ① 마지막으로 이직한 "사업장(또는 사업주)에 다시" 취업한 경우
- ② 마지막으로 이직한 "사업장과 합병·분할 관계"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 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
- ③ 실업의 신고일(수급자격 신청일) "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"에 취업한 경우
- ④ "대기기간(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간)"에 취업한 경우
- 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"소정급여일수가 1/2미만"인 경우
- ⑥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"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" 이 있는 경우
- ⑦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"하루라도 고용이 단절"(일용근로의 경우 근로일수 10일 미만)되거나,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(★단, 상용근로자로 "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단절기간이 9일 이내"인 경우는 제외)
- ⑧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★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"★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(1회이상)을 받은 이력 없이 경우★" 바로 사업(자영업)(프리랜서, 노무제공자 포함)을 개시한 경우
- 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(2024년 고시임금액 : 월 5,740,000원)
- ⑩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(다만,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)
- ⑪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

▶지급금액 : (구직급여일액×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은 소정급여일수)의 1/2 지급

▶신청시 제출서류

- ①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(근로자, 자영업사업자, 노무제공자, 프리랜서 공통)
- 서식:울산고용복지+센터(www.work.go.kr/ulsan)-->정보마당-->서식자료실-->"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"
- ② 첨부자료 (업종별로 제출서류 상이할 수 있음)
- 근로자 : 재직증명서(근무기간확인), 근로계약서(고임금 근로자확인)
※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"피보험자일용근로내역"으로 근로일수 확인
- 자영업자 : 사업자등록증과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과세증명자료[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, 세금계산서(매월 1건), 매입매출전표(매월1건)등 12개월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
- 노무제공자, 프리랜서등 : 계약서, 재직증명서, 위촉증명서등과 12개월간 급여 또는 소득금액 증명자료
-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 : [근로자]근로계약서(6개월이상 근무기간확인/월임금액확인)
[사업자]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(6개월이상 사업영위확인)

▶청구방법 :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고용센터 방문, 우편, 팩스(0508-8230-0439)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를 통해 신청 가능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(FAX 0508-8230-0439/ TEL 052-228-1901 또는 228-1964)